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양진오 의원 외 9명

2. 제안이유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을 일부 조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안 제4조제2항제1호~8호, 제7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안 제10조)

4. 참고사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조정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안 제4조제2항제1호~8호, 제7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안 제10조)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고, 편성과정에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의 조정 등에 관하여 검토·심의하기 위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 계 법 령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 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